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3800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6. 6. 3.

판결 선고2016. 7.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387,190원 및 그 중 628,164,358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8. 7.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417,190원 및 그 중

628,164,358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와 2015. 3. 23. 접수 제174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2. 2. 24. 신용보증원금을 1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2. 24.부터 2013. 2.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13. 4. 17. 신용보증원금을 3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4. 17.부터 2014. 4.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14. 5. 14. 신용보증원금을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4. 17.부터 2014. 4.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2012. 2. 24. 중소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으로부터 2억 원, 2013. 4. 17.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으로부터 4억 원, 2014. 5. 14.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2015. 3. 17. 원금 연체 등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628,164,358원(= 제1약정에 기하여

182,249,260원 + 제2약정에 기하여 364,753,696원 + 제3약정에 기하여 81,161,4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2,388,552원이고, 제1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976,430원, 제2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808,760원, 제3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49,090원이며,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피고 B은 2015. 3. 23.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387,190원¹⁾ (= 대위변제금 628,164,358원 + 법적절차비용 잔액 2,388,552원 + 제1약정 위약금 976,430원 + 제2약정 위약금 808,760원 + 제3약정 위약금 49,0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28,164,3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7.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5. 3. 2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전인 2015. 3. 17. 피고 A이 원금 지급을 연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5. 5. 28.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B에 대한 위 보증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갑 제13,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5. 3. 23.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042만 원 상당의 충북 음성군 D 전 676m² 토지의 1/3 지분, 시가 2,655만 원 상당의 E 전 354m² 토지가 있어 적극재산 합계액은 약 5억 3,669만 원(= 5억 원 + 3,042만 원 × 1/3 + 2,655만 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가.항 기재 법리에 의하여 소극재산에 포함되는 원고에 대한 632,387,190원의 위 보증금 채무,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72,340,768원의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피고 C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제외하고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다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는 피고 B과는 당초 안면이 없던 사이로서 중학교 동창생인 F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사실, ② 피고 C는 F의 주선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이자조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5. 2. 27. 피고 B이 지정해주는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고 위 피고로부터 차용금증서를 받았으나 위 피고는 당초 약속과 달리 즉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는 않은 사실, ④ 그러자 피고 C는 F에게 이 사실을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B이 2015. 3. 23.에야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 C와 피고 B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을 살펴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특별히 위 피고가 피고 B의 위 사해행위에 가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가 담보를 취득하기 이전에 대여금을 교부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금증서(을다 제1호증)상에 이자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 소비대차계약 및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C의 악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윤상도

판사명선아

판사김기호

별지

1) 원고는 632,417,190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위산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